의안번호	제721호
의 결	2024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이정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1 발의연월일: 2024년 10월 2일

발 의 자 : 이정범·김성대·김정일

박병천·박봉순·박진희

유상용 의원

1. 제안 이유

가. 관사의 공급 부족에 따른 교직원의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공 급자 중심의 주거지원 체계 개선

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임차비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 증진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교직원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마. 기금의 관리 · 유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자.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안

-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 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 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 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 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2. 기금운용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 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7조(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하다)를 설치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 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관의명칭	구분	기금관리직명	지정관직	
본청	명령기관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76기원	분임기금운용관	재정복지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사무관	
키즈 ㄱ ㅇ ᅱ 이 ᅱ	명령기관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과장	
청주교육지원청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교육지원청	명령기관		행정과장	
	출납기관	기금출납원	재산담당주무자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 교직원 중 근무기관이 위치한 시·군지역 내 무주택자로 한다.
- 제10조(지원한도액) 1인당 지원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하되, 매년 기금 형편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12.>

[전문개정 2011. 5. 30.]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 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 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 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7.>

- 1. "교육공무직원"이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지방공무원법」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소속 본 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 3. "공립학교"란「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충청 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삭제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제6조제3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과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시행일 2024. 1. 1.]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운용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급자 중심의 관사 지원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택임차 비 지원으로 주거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
- 주택임차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연차별 조성 및 운용·관리 필요

2. 비용 발생 요인

- (세입)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 재원
- (세출) 무주택 교직원의 주택 임차 보증금, 전세금 대여 등

3. 관련조문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2. 기금운용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교직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여
-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전제로 함
 - 최근 3년간 공동관사 입주 희망자 중 미입주자

(단위: 명)

연도별	2022 (연도별누적)	2023 (연도별누적)	2024 (연도별누적)	계	평균
희망자	560	782	666	2,008	669
입주자	234	283	260	777	259
대기자	326	499	406	1,231	410

-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르며, 근무지에 주택이 없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 나. 추계 결과: 5년간 35,000,000천원 소요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인 원	200	200	100*	100	100	700
지원액	10,000	10,000	5,000	5,000	5,000	35,000

- * 임차기금 시행 3년차부터 상환이 시작되며, 상환 비율을 50%로 산정하여 지 원액 감액 조정함
 - 1) 대부기간은 2년으로 대부 3년차부터 50% 상환 조건으로 추계
 - 2) 100% 상환시 대부 가능액 증가
 - 2년, 2회(총6년)까지 대부 연장 가능하므로 상환액 감소 예정
- 다. 재원조달방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 익금, 그 밖의 수입금
-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6. 작성자: 행정국 재정복지과장 박종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단기・연단)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서	입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서	출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주택	조제1호 백임차보증금, 베금 대여)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조제2호 밖에 사업)						
7	내원 조달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소 계						
	국고보조금						
의존 재원	보통교부금						
,,,,	특별교부금						
	소 계						
자체	자체수입	10,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5,000,000
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 만자, 예비 등						

※ 2025년도 본예산 편성 후 기금 집행